

여성들에게 희망을

2017 한국여성재단 <성평등사회조성사업> 안내

2017 한국여성재단 <성평등사회조성사업> 개요

1. 지원사업 취지

한국여성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여성공익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사업추진기간

2016년 2월 ~ 2016년 11월(총 10개월 간)

3. 지원 내용

1) 지원사업 구분

| 지원분야 | | 지원대상 | 지원예산(원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---|
|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| | 비영리 여성단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비 지원 • 최소 500만원, 최대 3천만원 |
|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| |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※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비 지원 • 최소 500만원, 최대 1천만원 |
|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| 신생단체 지원사업 |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(인건비 포함) 지원 • 최대 500만원 |
| |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| 여성(주의)운동 활동 그룹 ※ 비조직 활동(그룹) 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비(활동비) 지원 • 최대 500만원 |

2) 공모일정

| 추진시기 | 내 용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2016년 10월 19일(수) | 사업 공고 | ※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|
| 2016년 10월 19일(수) ~ 11월 30일(수) | 접수 | ※ 10월 30일(수),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|
| 2016년 12월 1일(월) ~ 2017년 1월 31일(수) | 사업 심사 (사무처/서류/면접) | ※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|
| 2017년 2월 13일(월) ※ 예정 | 결과 발표 | ※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|
| 2017년 2월 중순 | 교부신청서 제출 | ※ 최종 선정 이후 진행 |
| 2017년 2월 중 | 네트워크 워크숍 | |
| 2017년 2월 ~ 11월 | 사업 진행 | |
| 2017년 11월 20일(월) 이내 | 최종보고서 제출 | |

※ 사업 신청 시, 교부신청서 제출, 실무자 워크숍,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.

3. 신청방법

- ① 접수기간 : 2016년 10월 19일(수) ~ 11월 30일(수)
 ※ 11월 30일(수),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
 ※ 쿼서비스 이용 접수,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
- ② 접수방법 : 온라인(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)과 우편 모두 접수
 ※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
- ③ 접수처 : (04001)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(서교동)
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
- ④ 제출서류

| 구분 | 세부내용 |
|-----------|---|
| 온라인 접수 | <p>※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.</p> <p>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② 이메일 서류 제출 - 제출서류 : 지원신청서(훈글파일)</p> |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| <p>※ 첨부파일명 : 2017_(지원분야)_단체명.hwp ※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- 제출처 : 지원사업팀 김수현(free-hyune@hanmail.net)</p> |
| <p>우편 접수</p> | <p>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(소정양식)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※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(주민번호 뒷자리 삭제) 사본 1부 ※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(소정양식) 1부</p> |

4. 문의

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

TEL.02-336-6385 / E-mail. free-hyune@hanmail.net

세부 공고 내용

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

1. 사업명

-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

2. 신청사업내용

-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

※ 단, '여성 및 아동 폭력(성폭력, 가정폭력,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)'
과 관련된 주제는 '여성과 아동 폭력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사업' 분야를 통해 지
원 신청

※ '여성 및 아동 폭력'과 관련된 주제로 '자유주제' 분야에 신청한 경우, 분야를 변
경(자유주제 → 폭력주제) 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.

- 성평등 실현,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
 - :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
 - :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
 - :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
 - :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
 - :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
-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
 - :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·분석 사업
 - :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
-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
 - :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
 - :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
 - :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
 - :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
 - :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,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
-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
 - :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,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
 - :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
 - :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
-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(이슈 및 담
론 생산,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)

3. 지원대상

- 비영리 여성단체

※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.

단,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

※ 신청제외 단체

- 시민사회단체
-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
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
-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
- 대학 내 부설기관
-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
-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

4. 신청규모

-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,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

5. 신청사업 형태

| 구분 | | 세부내용 |
|---------|------|---|
| 사업 성격 | 신규사업 | . 본 사업 추진기간(1년)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|
| | 연속사업 | . 2016년에 지원된 '성평등 사회를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'의 연속(동일) 사업 |
| 사업 진행방식 | 단독사업 | .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|
| | 연대사업 | .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※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|

6. 신청 시 유의사항

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

- 지원사업과 관련, 중앙정부·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
-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(정당, 친목단체 등)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
-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
-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

- 경상적경비(일반운영비, 여비, 사무실임대료, 사무실집기)가 주된 사업
-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(비품, 물품) 관련사업
-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, 후원사업
-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
-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

② 사업신청의 제한

- 2014년~2016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(자유공모, 기획공모, 여성과 아동 폭력, 신생단체지원 포함)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
- 2014년~2016년 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
 - ※ 2015년~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.
-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,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
- 연대사업의 경우,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
-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,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(※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)
-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,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(센터, 상담소 등)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

③ 예산 편성

-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. 단,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
-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
-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(비품구입비, 수용비 및 수수료 등)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% 범위 내에서, 인건비의 경우(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) 신청지원금의 20%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
- 단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(인건비, 임대료, 경상운영비 등)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
- ※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

1. 사업명

-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

2. 신청사업내용

- 여성과 아동 폭력(성폭력, 가정폭력,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)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
- 사업 추진기간(1년)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
 - ※ 단,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
 - : 상담활동가 양성교육,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

3. 신청대상

-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
 - ※ 미등록 여성단체(시설)도 신청 가능.
 - 단, 미등록 단체(시설)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
 - ※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

※ 지원제외 단체

-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
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
-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
- 대학 내 부설기관
-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
-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

4. 신청규모

- 지원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,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

5. 신청사업 형태

| 구분 | | 세부내용 |
|---------|------|---|
| 사업 성격 | 신규사업 | . 본 사업 추진기간(1년)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|
| | 연속사업 | . 기지원된 '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'의 연속 사업(※ 3년 연속(동일) 사업 신청 가능) |
| 사업 진행방식 | 단독사업 | .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|
| | 연대사업 | .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※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|

6. 신청 시 유의사항

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

- 지원사업과 관련, 중앙정부·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
-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(정당, 친목단체 등)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
-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
-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
- 경상적경비(일반운영비, 여비, 사무실임대료, 사무실집기)가 주된 사업
-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(비품, 물품) 관련사업
-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, 후원사업
-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
-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

② 사업신청의 제한

- 2014년~2015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(자유공모, 기획공모, 여성과 아동 폭력, 신생단체지원 포함)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
- 2014년~2016년 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
- ※ **2015년~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.**
-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,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
- 연대사업의 경우,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(※ 단, 시민사회단체는 제외)
-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,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(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)
-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,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(시설, 쉼터, 센터, 상담소 등)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

③ 예산 편성

-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. 단,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
-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
-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(비품구입비, 수용비 및 수수료 등)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% 범위 내에서, 인건비의 경우(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) 신청지원금의 20%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
- 단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(인건비, 임대료, 경상운영비 등)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
- ※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|

- 신생여성단체 지원

1. 사업명

-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

2. 신청사업내용

-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
- 시업 추진기간(1년)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

-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
 - :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
 - :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
 - :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
-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
 - : 단체 운영비 지원
 - : 단체 인건비 지원

3. 신청대상

- 비영리 신생여성단체
 - ※ 신생여성단체란?
 -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
 - 설립한지 3년 이내,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
 - ※ 미등록 여성단체(시설)도 신청 가능
 - 단, 미등록 단체(시설)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

- ※ 지원제외 단체
 - 시민사회단체
 -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
 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

-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
- 대학 내 부설기관
-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
-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

4. 신청규모

- 단체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

5. 신청사업 형태

| 구분 | 세부내용 |
|------|--|
| 신규사업 | · 본 사업 추진기간(1년)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|
| 연속사업 | · 기지원된 '신생단체 지원사업'의 연속 사업 (※ 3년 연속(동일) 사업 신청 가능) |

6. 신청 시 유의사항

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

- 지원사업과 관련, 중앙정부·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
-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(정당, 친목단체 등)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
-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
-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
-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, 후원사업
-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
-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

② 사업신청의 제한

- 2014년~2015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(자유공모, 기획공모, 여성과 아동 폭력, 신생단체지원 포함)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
※ 2015년~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.
-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,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
-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,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(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)
-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,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(센터, 상담소 등)을

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

③ 예산 편성

-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. 단,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

- **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**

-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(비품구입비, 수용비 및 수수료 등)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% 범위 내에서, 인건비의 경우(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) 신청지원금의 20%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

단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(인건비, 임대료, 경상운영비 등)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

※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II

-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

1. 사업명

-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

2. 신청사업내용

-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여성(주의)운동 그룹(팀) 지원
 - 여성(주의)운동 그룹(팀) 목적사업비 지원
 - : 온·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(활동) 지원

3. 신청대상

- 여성(주의)운동 그룹(팀)
 - ※ 신청 조건?
 -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
 - 여성주의에 기반 한 운동 활동 경험이 3개월 이상 된 그룹(팀)
 -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관련 사업(활동)을 3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그룹(팀)
 - 3개월 이상의 활동 경력 제시 필요
 - 단, 등록된 단체(기관)는 지원 불가

4. 신청규모

- 그룹(팀)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
 - ※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 신청 가능
 - ※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

5. 신청 시 유의사항

- 그룹(팀)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
-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. 단, 자부담 계획이 있는 그룹(팀)은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
-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
- ※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사람들에게 희망을

2017 한국여성재단 <성평등사회조성사업> 회계지침 안내

□ 예산과목

| 관 | 항 | 목 | 세목 예 | 내역1) |
|----------|-------|-----|--|------|
| ○○○사업비 | 사업비 | 사업비 | 【직접비 중 인건비성 경비】 심사비, 강사비, 발제비, 토론비, 자문비, 거마비, 원고료, 기획비, 회의 참석비, 통역료, 번역료, 프로그램 진행자 인건비, 영상 및 자료 제작시 용역비, 연출료, 코디네이터, 멘토링비 경비 외 | 직접비 |
| | | | 【행사 및 프로그램비】 토론회, 사업설명회, 캠페인, 보고회, 간담회, 소모임, 워크샵, 회의비, 각종 행사비 외 | |
| | | | 【홍보비】 홍보물(포스터, 전단지, 홍보책자, 판촉물, 기념품 등) 제작비, 자료집현.현수막.보고서.사업영상CD제작비 외 | |
| | | | 【사업내용에 따라】 직업훈련(교육훈련)비, 의료지원비, 글로벌연수비, 연구비, 교통비, 사례 지원비, 자활지원비, 상금, 시설비, 공사비 외 | |
| | | | 【기타 사업비】 심그 밖의 직접비로 위의 세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업비 | |
| ○○○관리운영비 | 관리운영비 | 인건비 | - 사업담당자 인건비 중 일부 지원 - 사업수행에 필요한 단순인건비(일용직) (* '성평등사회조성사업'은 해당하지 않음) | 간접비 |
| | | 운영비 | 【공공요금】 우편료, 전신전화료, 전기료, 상하수도료, 가스료 등 【수용비 및 수수료】 사무용품비, 도서구입비, 수수료, 발송비, 통행료, 주차료, 복사비, 제본비, 소액수리비, 포장비, 쓰레기봉투구입비 등 【업무추진비】 사업관련 미팅 비용, 사업담당자 출장교통비 등 【기타 운영비】 그 밖의 운영경비로 위의 세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| 간접비 |

1) ()사업비 / (목)사업비 : 프로그램 비용, 강사비, 캠페인 비용, 자료 제작비, 토론회 비용 등 직접사업비
 (항)관리운영비 / (목)인건비 : 지원사업 주담당자 인건비는 재원의 특성과 정해진 일정비율에 따라 편성 가능
 (항)관리운영비 / (목)운영비 : 그 외 간접경비인 운영비는 재원의 특성과 정해진 일정비율에 따라 편성 가능

□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사업담당자 인건비 및 운영비 편성의 허용 범위

- 사업담당자 인건비 : 신청사업비의 20% 한도내에서 편성 가능.
단, 정부 혹은 타 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편성할 수 없음.
- 운영비 : 신청사업비의 10% 한도 내에서 편성 가능.
단, 단체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단체는 사업담당자 인건비 및 운영비 편성할 수 없음.

□ 예산 편성 기준표

| 예산과목 | 기준 | 사용한도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강 사 비 일 반 | - 대학 조교수 이상,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- 기업, 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, 중역 - 판·검사, 변호사, 회계사 등 전문직 - 기타 위의 자격에 준하여 단체(시설)의 장이 인정하는 자 | - 1시간 180,000원 - 초과 매시간당 100,000원 | * 수행단체(시설)의 내부직원 지급불가 단, 예외적으로 단체(시설)의 임원에 한하여 일회 5만원 한도, 총 교육 횟수의 30% 이내 지급 가능 |
| | -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, - 특별강사 - 기타 위의 자격에 준하여 단체(시설)장이 인정하는 자 | - 1시간 130,000원 - 초과 매시간당 50,000원 | * 강사비는 원고료가 포함된 금액임 |
| | -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- 외국어, 전산 등의 학원 강사 - 기타 단체(시설)장이 인정하는 자 | - 1시간 100,000원 - 초과 매시간당 40,000원 | *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강사비 책정 가능(자율적으로 힘들 경우 강사비 등급 확인) |
| | - 보조강사(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) | - 1시간 50,000원 - 초과 매시간당 30,000원 | |
| | * 무통장입금 이체 시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각 예산 항목으로 포함해서 계산 예) 강사비 200,000원 + 수수료 500원 = 강사비 200,500원 | | |

◆ **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(외부 강의 등에 대한 강연료)**

※ 공직자 등 :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/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, 학교법인임직원, 언론사 대상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

| | |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직자 | -장관 50만원, 차관 40만원 -4급이상 30만원, 5급이하 20만원 (시간당 상한액으로 1시간 초과시 상한액의 2/1까지 허용) | 4급 :국립대 교수, 부교수 5급 :조교수 |
|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| -기관장 40만원, 임원 30만원 -그 외 직원 20만원 (시간당 상한액으로 1시간 초과시 상한액의 2/1까지 허용) | 서울대, 인천대(국립대학법인) 그 외 직원 :교수,부교수 |
| 학교장,교직원 언론인 | 100만원(시간당) | 사립대 |

| | 기준 | 사용한도 | 비고 |
|--------|--|---------|---|
| 워크샵 | - 1인 기준 | 70,000원 | *1박2일기준 (숙박비,식비) *진행비(교통비,대관료 등)는 실비 적용 별도 편성 |
| 인쇄비 | - 정부 인쇄기준요금 ※ 인쇄업체의 원가계산서(단가산출표)첨부 ※ 홍보물 및 책자제작의 경우 배포계획서를 마련하여 비용 최소화 | | |
| 홍보비 | - 생활정보지 : 1회 100,000원 이하 - 현수막 : 장당 100,000원 이하 - 우편료 등 : 실비 정산 | | |
| 단순 인건비 | - 1일 8시간 기준 60,000원(중식비 포함) ※ 1시간당 단순인건비 6,500원(최저임금액 시간당 6,470원) | | * 근로기준법, 소득세법 준수 |

| | 기준 | 사용한도 | 비고 |
|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교통비 | - 시내여비 | 실비 | |
| | - 시외 여비 | 교통비 (KTX일반, 고속버스, 전세버스 등) | 실비 |
| | | 식비(1인 1식) | 8,000원 |
| | | 숙박비(1인 1실) | 실비 (상한액 50,000원) |
| 식사비 | - 1인 기준 | 8,000원 | |
| 다과비 | - 1인 기준 | 4,000원 | |
| 자문비 | - 2시간 이하 | - 1회 70,000원 | * 자문기록필 히 비치 * 시외 경우교 통비 실비 지급 가능 * 1일 최고 200,000 원 상한 * 수행 단체 (시설)의 내부직원 지급불가 |
| | - 2시간 초과 | - 1회 100,000원 | |
| | - e-mail 자문(유선포함) | - 20,000원(1회당) | |
| | ※ 공통사항 : 자문내용 기본 form A4 용지 80 columns x 20 lines 글씨크기 13 point 문단간격 160%, 상하 여백 15, 좌우 여백25 | | |
| 심사비 | - 면접심사 | - 1일 100,000원 | * 심사기록필 히 비치 * 시외 경우 교 통비 실비 지급 가능 |
| | - 서류심사 | - 사업별 회당 200,000원 | |
| | - 현장방문(사업진행 확인과 슈퍼비전) | - 회당 200,000원 | |
| 회의 참석비 | - 3시간 이하 | - 70,000원 | * 회의록 필 히 비치 * 수행 단체 (시설)의 내부직원 지급불가 |
| | - 3시간 초과 시(1일 1회에 한) | - 100,000원 | |
| 원고료 | - A4용지 1매 기준 / 300단어 - 파워포인트 작성 / 슬라이드3면 - 원고지로 작성 / 200자원고지 3.5매 | - 15,000원 | * 강사비와중복 지출 불가 * 자료집,보 고서 등의 제작에 필 요한 원고 를 외부에 청탁한 경 우에 해당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번역· 통역비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역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한국외대 통역번역센터(www.hufscit.com) 요율표 기준 ※ 매해 발표되는 기준 참조, 시행시점 가장 최근 자료 이용 ※ 국제회의 등 전문통역이 아닌 가이드 형식의 통역은 해당금액의 1/2이하 적용 - 번역비(결과물 기준) A4용지 1매당 20,000 이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번역분야 및 난이도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※ 한국외대 통역번역센터(www.hufscit.com) 요율표 참조 - 번역내용 기본 form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A4 용지 80 columns x 20 lines 글씨크기 13 point 문단간격 160%, 상하 여백 15, 좌우 여백25 | <p>* 이주여성 중 가능 인력 활용</p>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